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1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2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7. 23.
- (3) 회 부 일 : 2026.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¹⁾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 신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재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일정 시간 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 및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지정되는 지역으로²⁾, 2026년 9월 기준 총 98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음.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현황 >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대구	군위군
2. 인천	강화군, 옹진군
3.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11. 제주	서귀포시

자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 의료취약지는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이용이 어려운 관계로,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에 따라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을 특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³⁾.

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하여 참고된 지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지역응급센터로 30분 안에 닿지 못하는 인구 비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의료취약지 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와 같은 지표를 충족하나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여 동 지표들과 지정 현황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2026년도 기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⁴⁾ 예산은 약 175 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만취약지 지원(116억원), 소아청소년과 지원(18억원), 인공신장실 지원(11억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28억원) 등임.

- 한편 응급환자의 이송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24조⁵⁾에 따라 구급차등 운용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차의 유형(일반·특수구급차), 이송거리, 야간·휴일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책정에 차이가 있어, 이송거리가 길 경우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상세 기준 [참고]).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안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50-30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우선 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6)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를 감안하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개정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법 제11조7)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장거리 이송에 관한 재정 지원과 환자로부터의 이송비 수취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장거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위임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동의함. 다만, 장거리 이송비 지원은 대도시·상급병원 이용을 유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과 상충이 우려되므로,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가 동승하는 전문 이송체계(닥터헬기, 중증전용구급차 등)를 고도화하는 것이 정책 목적과 예산 효율성에 부합함.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위법령으로 응급실 지원·이송 지원 등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경기 가평군)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도 응급실의 운영 및 장거리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가평군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관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나, 시설·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응급의료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전북 김제시)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 외에도 지역의 실제 응급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확대 검토 필요

-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일부(전북 김제시, 부산 기장군, 경기 이천시 등)는 실제로는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정여부만으로 실질적인 응급의료 여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전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